

1.약관명: 추가약정서(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용도)

2.시행일: 2025.12.0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추가약정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1조 (공통사항) 대출금 상환 등</p> <p>① 본인은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1조 (공통사항) 대출금 상환 등</p> <p>① 본인은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, 회수금액 전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	회수금액 사용 규정화
<p>제2조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(대상자 여□ / 부□)</p> <p>① 본인은 본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아래와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	<p>제2조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(대상자 여□ / 부□)</p> <p>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본인은 본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회수금액 전액으로 아래의 기준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고, 회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합니다.</p>	